

제2025-35호 2025년 4월 22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20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5-20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2
○ 여수시 고시	제2025-20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5-20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4
○ 여수시 고시	제2025-2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5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1298호	근로자의 날(5. 1) 공립 작은도서관 임시휴관 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5-1322호	도로지정 변경공고(해산동 387-1번지)	7
○ 여수시 공고	제2025-1324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	9
○ 여수시 공고	제2025-1326호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25-1328호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25-1329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25-1331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17
○ 여수시 공고	제2025-1336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덕양리 1037-13번지)	18
○ 여수시 공고	제2025-1338호	여수시 축제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알림	20
○ 여수시 공고	제2025-1341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2
○ 여수시 공고	제2025-134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대체복지 부지조성사업)	23
○ 여수시 공고	제2025-1345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25-134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우두리 56-8번지 외 1필지)	28
○ 여수시 공고	제2025-1348호	정보공개 제3자 의견 청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8
○ 여수시 공고	제2025-1349호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건축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40
○ 여수시 공고	제2025-1353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시행 행정예고	45
○ 여수시 공고	제2025-1362호	「여수시 금금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6
○ 여수시 공고	제2025-1373호	도로지정 공고(율촌면 조화리 873번지)	91
○ 여수시 공고	제2025-1375호	도로지정(변경) 공고(소라면 대포리 81-1번지)	93

읍 면 동

○ 여수시 만덕동 공고	제2025-17호	만덕동 1통장 모집 공고	95
--------------	-----------	---------------	----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 - 20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74 (2024. 12. 17.)	2025. 4. 21.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5.7.15.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185번지 일원	화정면 신흥항 부잔교 설치공사

2025. 4. 21.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49 (2024. 8. 21.)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남면 유송리 139-13번지 일원	214㎡	2025. 4. 21.	남면 소유향 소형선부두 확장공사

2025. 4. 21.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 - 20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3-60 (2023. 12. 1.) (변경승인 2025.3. 11.)	2025. 4. 22.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자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5.6.30.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626번지 일원	지방어항(신기항) 보수보강사업

2025. 4. 2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 - 20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76 (2024. 12. 18.)	2025. 4. 22.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자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5.7.31.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961-1번지 일원	삼산면 유촌항 공동작업장 확충 및 방호벽 설치공사

2025. 4. 2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 - 2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78 (2024. 12. 27.)	2025. 4. 22.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자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6.2.28.	여수시 화정면 상화리 133-4번지 일원	화정면 상화도 방파제 연장공사

2025. 4. 22.

여 수 시 장

공립 작은도서관 임시 휴관 공고(안)

근로자의 날(5. 1.)을 맞아 공립 작은도서관(8개관)의 근무자 휴무를 위하여 도서관 휴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여 수 시 장

- 근 거: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 사 유: 근로자의 날(5. 1.) 공립 작은도서관 근무자 휴무
- 휴 관 일: 2025. 5. 1.(목) / 1일간
- 휴관대상: 공립 작은도서관 8개관

작은도서관명	위 치	문의처
은빛바다 작은도서관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103(여객터미널 3층)	659-2853
동부도시보건 작은도서관	여수시 동문로 99(동부도시보건지소 1층)	659-4320
치매안심센터 작은도서관	여수시 신월로 794(치매안심센터 1층)	659-2881
꿈을키우는 작은도서관	여수시 양지1길 5(선경3차A)	653-1117
청솔글누리 작은도서관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25(청솔2차A)	644-1112
화양열린 작은도서관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5(화양면민회관 2층)	681-9676
여문늘벗 작은도서관	여수시 장군산길 7(구 중부보건지소 지하)	654-5120
국동 작은도서관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 임시별관 1층)	659-5299

도로 지정 (변경)공고

여수시 해산동 387-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 공고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해산동 387-1번지
2. 도로면적 : 7m²
3. 도로길이 : 10.1m
4. 도 로 폭 : 1.69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143	7.43	
변경	계			143	7	
당초	해산동	387-1	대	143	7.43	
변경	해산동	387-1	대	143	7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4-3857호(2024. 12. 30.)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5. 4. 17.

여 수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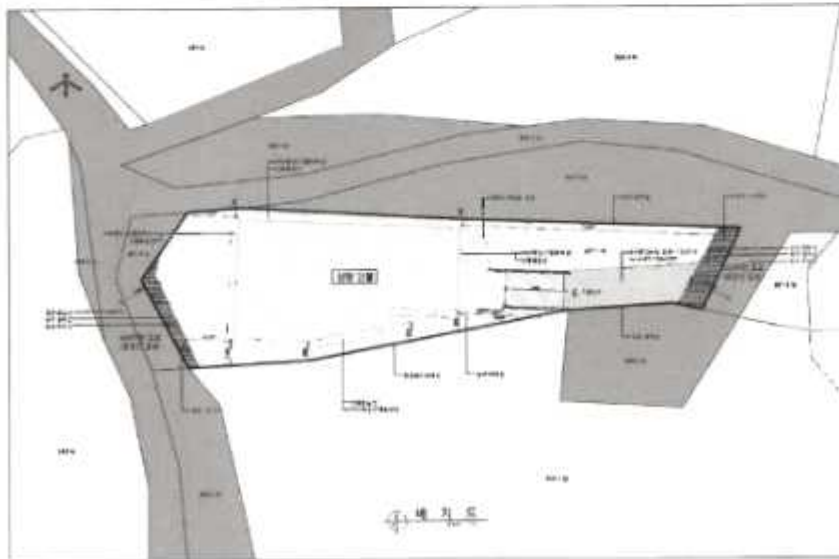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협력을 추진하고자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여수시가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여 수 시 장

□ 참여목적

- 에너지 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분권의 새로운 목표를 함께 지향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방정부협의회와 공유·실행하고자 함.

□ 참여자치단체 현황

- 회 장 : 경기 수원특례시
- 부 회 장 : 경북 포항시
- 사무총장 : 경기 시흥시
- 회원도시 : 29개 기초자치단체

□ 협의회 구성

- 대 상 : 참여에 동의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협의회 구성

-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바지선으로 인하여 미관 저해, 선박 정박 및 항해시 안전 위험, 해양오염 발생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5년 5월 2일(금)**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5. 4. 18. ~ 2025. 5. 2.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바지선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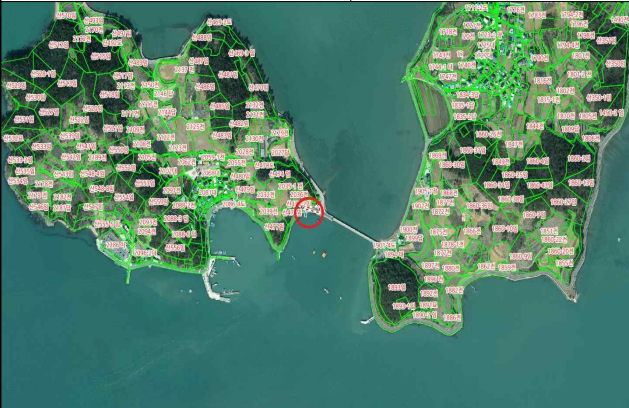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061-659-3971)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2025-1326호			
무 단 방 치 물(바지선)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474-3번지 일원 공유수면		
물 건 제 원	바지선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2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5월 3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위치도		현장사진	
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u>2025년 5월 2일(금)까지</u>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해양정책과 061-659-3971)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바지선으로 인하여 미관 저해, 선박 정박 및 항해시 안전 위험, 해양오염 발생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5년 5월 2일(금)**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5. 4. 18. ~ 2025. 5. 2.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바지선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061-659-3971)로 연락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1328호			
무 단 방 치 물(바지선)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488번지 일원 공유수면		
물 건 제 원	바지선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3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5월 3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위치도		현장사진	
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u>2025년 5월 2일(금)까지</u>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해양정책과 061-659-3971)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여 수 시 장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4. 17.(목) ~ 2025. 5. 2.(금) (15일간)
- 납기일자 : 2025. 5. 2.(금)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예정 처분내용
휴게음식점	탐스터디 카페	오**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23 (여서동)	2024년도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부과

5. 고지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 식품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6. 유의사항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청(여수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여수시 식품위생과 문진석(☎061-659-4229)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및 대표자 : (주)대우플랜트
-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270-12
-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35721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25-사-06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025. 4. 17.

2025년 4월 17일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37-13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4. 18.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37-13번지
2. 도로면적 : 5.24㎡
3. 도로길이 : 12.98m
4. 도 로 폭 : 0.40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200.4	5.24	
소라면 덕양리	1037-13	대	200.4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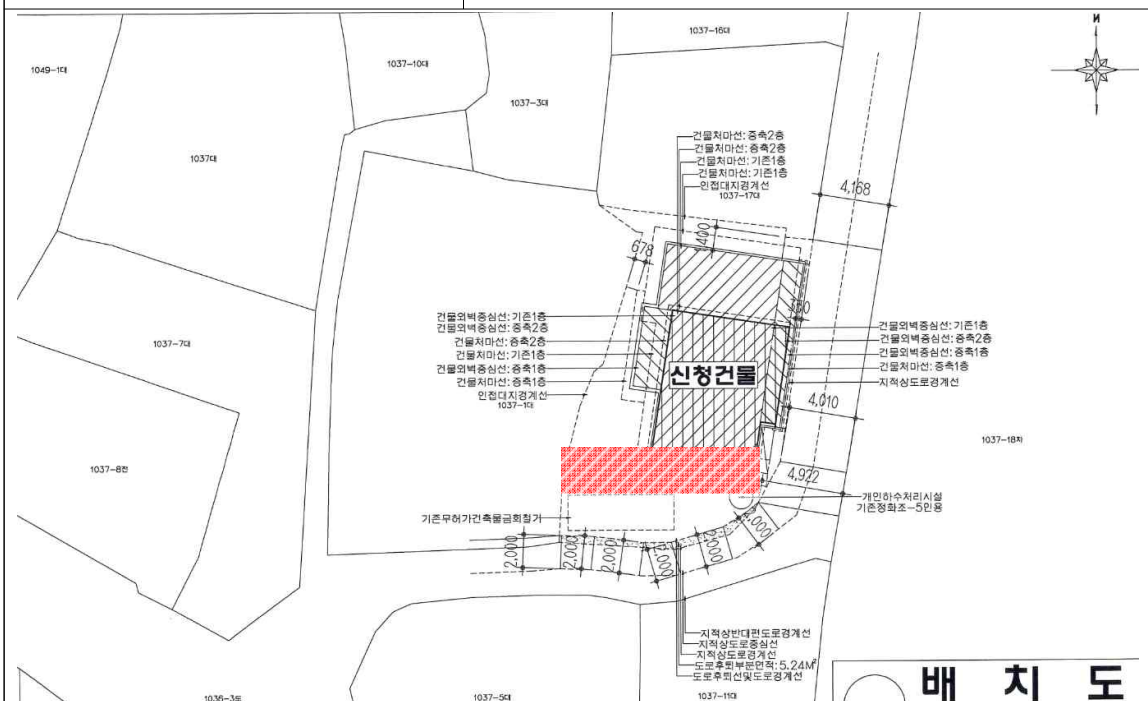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공 고 (안)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 위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축제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1. 공고기간 : 2025. 4. 21. ~ 5. 6.(16일간)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등 게재
 3. 위원구성 :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4. 위원임기 : 2025. 4. 19. ~ 2027. 4. 18.(2년)
 5. 기 능
 -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폐합
 -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
 - 축제별 평가결과 검토 및 반영
 -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위원명단 : 붙임
- ※ 기타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659-474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축제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2025. 4월 현재)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직 업	위원임기	위촉구분
1	위원장	최정기	남	부 시 장	재직기간	당연
2	부위원장	정재호	남	문화관광체육국장	재직기간	당연
3	위원	송하진	남	시의원	‘25. 4.19. ‘27. 4.18.	위촉
4	위원	민덕희	여	시의원	‘25. 4.19. ‘27. 4.18.	위촉
5	위원	송길선	남	전)여수시보조금심의관리위원	‘25. 4.19. ‘27. 4.18.	위촉
6	위원	임영찬	남	한국해양문화관광 산업연구원장	‘25. 4.19. ‘27. 4.18.	위촉
7	위원	임형재	남	전)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추진위원장	‘25. 4.19. ‘27. 4.18.	위촉
8	위원	이경기	남	전남일보 국장	‘25. 4.19. ‘27. 4.18.	위촉
9	위원	이승필	남	전)GS칼텍스 예울마루관장	‘25. 4.19. ‘27. 4.18.	위촉
10	위원	박은경	여	여수 YWCA 회장	‘25. 4.19. ‘27. 4.18.	위촉
11	위원	심은경	여	여수국제미술제 사무국장	‘25. 4.19. ‘27. 4.18.	위촉
12	위원	이정숙	여	여성단체연합회 감사	‘25. 4.19. ‘27. 4.18.	위촉
13	위원	정주율	남	여수시 보조금심의위원회	‘25. 4.19. ‘27. 4.18.	위촉
14	위원	박은영	여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25. 4.19. ‘27. 4.18.	위촉
15	위원	박효연	여	전남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	‘25. 4.19. ‘27. 4.18.	위촉
	간사	강행숙	여	문화예술과장	재직기간	당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사항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위반으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7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 및 불복절차를 고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제11조
3. 공고기간 : 2025. 4. 18. ~ 5. 3.(15일간)
4.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연번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결과
1	미용업	더예뽐뷰티샵 (Beauty#)	김*림	전남 여수시 도원로157, 2층(도원로)	영업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영업소 폐쇄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광주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 (☎ 061-659-4278)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로부터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04. 22.

여 수 시 장

- ☐ 사 업 명 :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 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
- ☐ 열람기간 : 2025.04.22. ~ 2025.05.07.
-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여수시 시청로 1(학동)), ☎ 061-659-4011
- ☐ 의견제출기간 : 2025.04.22. ~ 2025.05.07.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산375-1번지 총 2필지(2,748.222㎡)
- 토지소유자 : 김*덕(주소 : 남원시 내척동 산*)외 14명
-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없음
-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여주시)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40/380	김*덕	남원시 내척동 산 *			
2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15/380	박*	여천시 상암동 *			
3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36/380	배*심	여천시 상암동 *			
4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6/380	장*일	여천시 상암동 *			
5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20/380	장*감	광주 서구 농성 동 *			
6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6/380	장*애	여주시 미평동 *			
7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80/380	장*덕	여천시 상암동 *			
8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80/380	장*영	여천시 상암동 *			
9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6/380	장*이	여천시 상암동 *			
10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6/380	장*남	여천시 상암동 *			
11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6/380	장*례	여주시 연등동 *			
12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6/380	장*엽	여주시 충무동 *			
13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40/380	장*익	남원시 내척동 산 *			
14	낙포동	산375-1	임	임	835	835 ×24/380	장*익	여주시 덕충동 *			
15	낙포동	산371-10	임	임	12,510	1,933	조*래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세검정 로*			

(별지 1)

의견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
사 업 의 종 류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
수용·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의 견	
2025년 월 일 성명 : (인) 주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연장 허가 번호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5-8	11591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소리면 현천리	현천어촌계	
2025-9	11593	바닥식 (살포식)	12	소라 사곡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소리면 사곡리	복촌어촌계	
2025-10	11594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소리면 사곡리	복촌어촌계	
2025-11	11595	수하식 (수하연식)	3.3	돌산 금봉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330	여수시 화양면 양지돛길 16	정*자	
2025-12	11596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이천어촌계	
2025-13	11597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이천어촌계	
2025-14	11598	바닥식 (살포식)	3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	순천시 해룡면 선창길 53-57	김*희	
2025-15	11599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여자어촌계	
2025-16	11600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여자어촌계	
2025-17	11601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여자어촌계	

2025-18	11602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여자어촌계	
2025-19	11603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서촌어촌계	
2025-20	11604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서촌어촌계	
2025-21	11605	바닥식 (살포식)	4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	여수시 율촌면 소등이길 131	정*성	
2025-22	11606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1,000	여수시 율촌면 당머리길 16	정*양	
2025-23	11607	바닥식 (살포식)	4	돌산 금봉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70-5	남*임	
2025-24	11608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율촌면 반월리	반월어촌계	
2025-25	11609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면제	여수시 율촌면 반월리	반월어촌계	
2025-26	11610	바닥식 (살포식)	5	화정 여자	2015.05.29.- 2025.05.28. (10년)	2025.05.29.- 2035.05.28. (10년)	-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210-7	조*웅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4. 21.

여 수 시 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돌산읍 우두리 종교시설 증축공사

나. 사업주체 : 용월사사찰회

다. 시 공 자 : 네스트종합건설(주)

라.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56-8번지 외 1필지

2) 증축 내용 : 종교시설(사찰) / 지하2층, 지상2층 / 연면적 1,060.29㎡

3) 공사기간 : 2025. 3. ~ 2025. 11.

4) 순공사비 : 3,850,000,000원

5) 안전점검 비용 : 1,100,000원(VAT 별도)

마. 건축(변경)허가일 : 2025. 2. 18.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210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4. 22.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5. 4. 23.(수)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4. 24.(목) 09:00 ~ 18: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4. 24.(목) 09:00~ 18: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주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 가 항 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 업 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4]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 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정보공개 제3자 의견 청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견조회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서 제출 요청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21.(월) ~ 2025. 4. 28(월)
3. **공고방법** :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송달내용**
 - 가. 청 구 인 : 오*정
 - 나. 대 상 자 : 박*상(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로 ***-*)
 - 다. 청구내용 : 울촌면 신평리 1019번지 및 인접토지 등록사항 정정 당시의 측정면적, 결정면적 등
6.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1.

여수시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23.>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건축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건축 설계공모(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일

여 수 시 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건축 설계공모(제안공모)

나. 위 치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823-3번지 일원

다. 대지면적 : 19,261㎡

라.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마. 건립규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900㎡(±5% 범위 내 조정 가능)

바. 주 용 도 :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 주요시설 : 해양웰니스 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관광안내소 외 옥외 치유시설 등

아. 예상공사비 : 금 17,68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녹색건축/장애물없는생활환경/에너지효율등급(해당 시)/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해당시) 수수료(건설팅비용 포함) 등에 대한 총공사비임(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용역비 : 금 993,52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1) 건축(인테리어 포함),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시험굴착, 지반조사, 손해배상공제료, 각종 인허가, 설계자문, 계약심사, 재해영향평가(필요시), 조달청 공사 원가검토 및 설계 적정성검토(필요시), 교통성검토(필요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인증 및 취득대행 업무 포함이며, 각 인증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 2) 당선자는 계약 시 상기 전기·통신·소방 등 각종 용역수행(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기본설계 90일, 실시설계 210일)

바. 용역범위: 건축(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등 포함한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준공도서 검수와 승인, 관계법령 검토 및 인허가 행정 절차 이행(준공 시 까지) 등을 포함

※ 설계내용의 기본과업 및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공모목적

-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구현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설계 제안 공모를 실시함.

3. 공모방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 건축설계 제안 공모

4.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
- 다. 응모신청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응모자 포함)
- 라. 공동으로 응모할 때 응모자는 위 사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고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 공동응모는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의미함.
- 마. 응모등록과 현장설명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제출 권한이 있으며 설계공모 참여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다.(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현장참석은 응모업체 중 1개 이상 참여한 경우 유효함)
- 바.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사.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건축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아. 공동응모 협정을 하지 않거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참가자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음.

5. 설계공모 일정

가. 일반사항

- 1)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 통보함.
- 2)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설계공모 일정

구 분	공 모 일 정	비고
사전규격공개	2025. 4. 15.(화) ~ 4. 18(금)	
입찰 공고	2025. 4. 21.(월) ~ 5. 23.(금)	
참가 등록	2025. 5. 7.(수) 10:00 ~ 16:00	여수시청 (관광과)
현장설명회	2025. 5. 7.(수) 10:00 ~ 16:00	여수시청 (관광과)
질의 접수	2025. 5. 14.(수) (*qudgus333@korea.kr)	이메일 제출
질의 회신	2025. 5. 16.(금) ※ 개별 e-mail 통보	
제안서 접수	2025. 5. 23.(금) 10:00 ~ 17:00	여수시청 (관광과)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5. 5. 28.(수) 14:00(예정)	국동임시별관 (2층 상황실)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2일 이내	홈페이지 공고
용역계약 체결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여수시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예정임.

6. 심사위원회

가. 구성인원 : 총 7명(위원 7명)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박 용 목	(유)다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	이 승 현	(유)예가건축사사무소	건축사	
3	박 홍 근	(주)포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	박 성 진	목포대학교	교수	
5	나 은 영	나숨건축	건축사	
6	곽 영 경	(주)간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7	백 진 영	건축사사무소진	건축사	

- 1) 심사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회피 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 시 개최함

7.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실격 및 감점 기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9. 기타사항

- 가. 설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에게 있음.
- 나. 공모안 중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라.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며, 그 외 명기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마.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바.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음.
- 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자. 기타 사항은 여수시 관광과 관광개발팀 담당자(☎ 061-659-3881)에게 문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2025년 제1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 신규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구간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연등동 256	편측(33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2	여서동 405 배울학어린이집 앞길	편측(2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3	망마로 104-1	편측(5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4	평여동287-6(한화솔루션 앞)	편측(3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5	웅천중앙로 8(지웰1차 정문 건너)	편측(35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6	산단중앙로 10(화치동 대한통운, 한국실리콘)	양측(6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7	덕양로 21-18(죽림젠트리스 후문, 버스정류장)	양측(61, 8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8	장성4길 36(안산중학교)	편측(10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9	안산1길 136(모아미래도)	편측(15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10	문수로 131(여서119안전센터)	편측(22m)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11	여수산단로 725(화학119구조센터)	편측(112m)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12	여수산단로 321(평여119안전센터)	편측(40m)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13	소라면 대포리 1512-5(소라119안전센터)	편측(114m)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14	남산북9길 20	편측(20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15	구봉길 19	양측(60m, 82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16	여서동 406	편측(65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5. 14.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5. 4. 21.(화) ~ 5. 13.(화), 22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5. 4. 21.(월) ~ 5. 13.(화) 18:00, 22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연등동 256(편측 L=20m)



② 여서동 405 배울학어린이집 앞길(편측 L=2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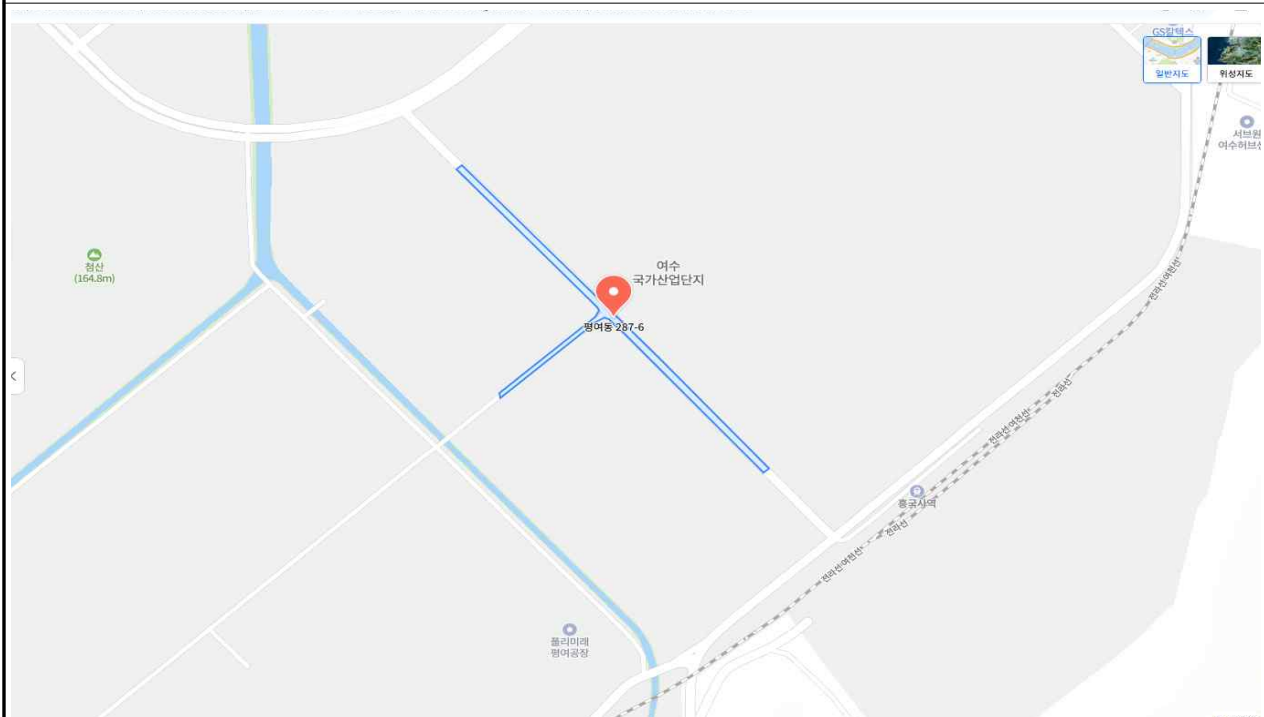


③ 망마로 104-1 (편측 L=40m)



④ 평여동287-6(한화솔루션 앞)(편측 L=3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⑤ 응천중앙로 8(지웰1차 정문 건너)(편측 L=35m)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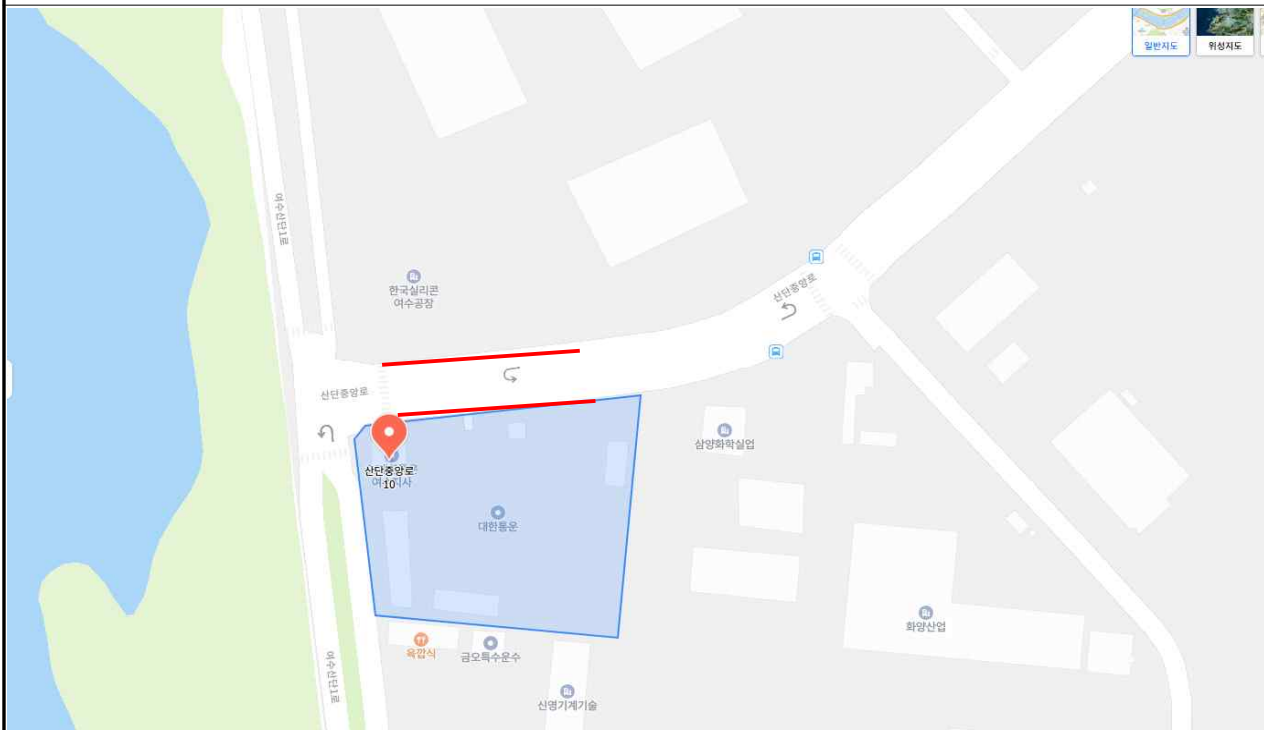
현 장 사 진

취 시 노



⑥ 산단중앙로 10(화치동 대한통운,한국실리콘)(양측 L=6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⑦ 덕양로 21-18(죽림젠트리리스 후문, 버스정류장)(양측 L=61, 8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현장사진

⑧ 장성4길 36(안산중학교)(편측 L=10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⑨ 안산1길 136(모아미래도)(편측 L=15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⑩ 문수로 131(여서119안전센터)(편측 L=22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⑪ 여수산단로 725(화학119구조센터)(편측 L=112m)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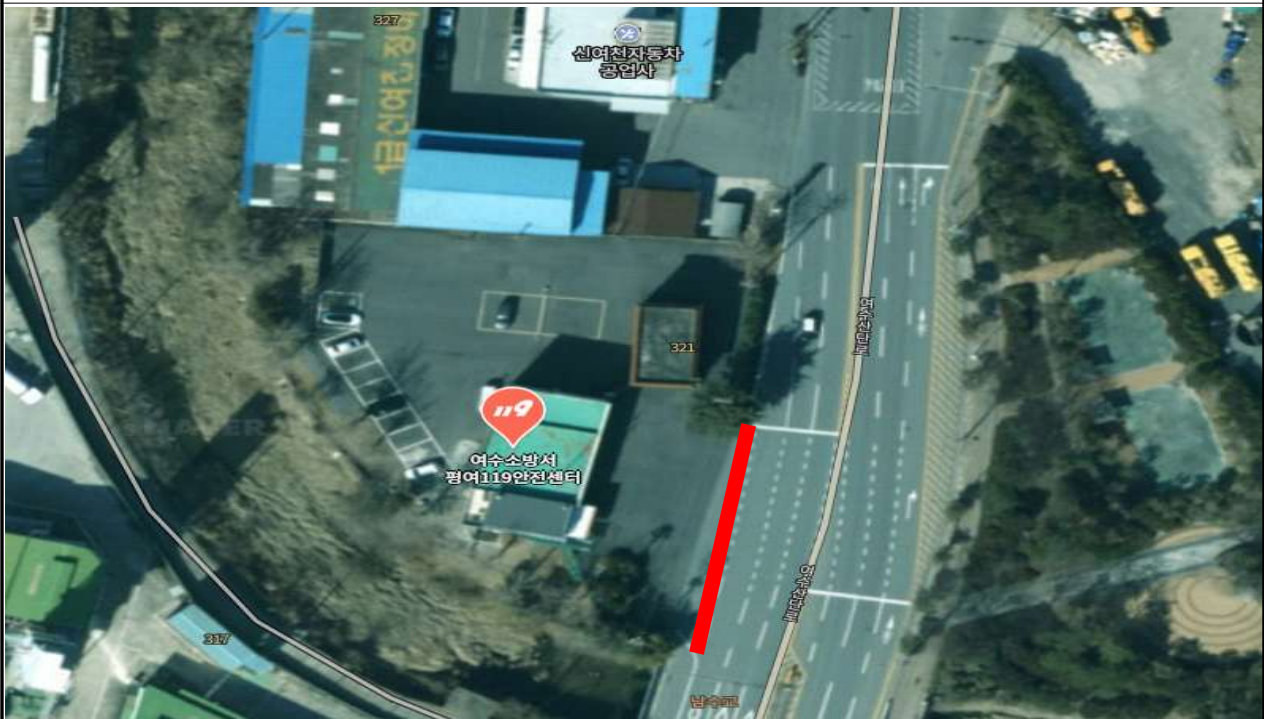


현 장 사 진



⑫ 여수산단로 321(평여119안전센터)(편측 L=4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⑬ 소라면 대포리 1512-5(소라119안전센터)(편측 L=114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⑭ 남산북9길 20(편측 L=20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⑮ 구봉길 19(국동경남아파트)(양측 L=60m, L=82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⑩ 여서동 406(여수시 의회 앞)(편측 L=65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 2] 의견 제출서

[illegible]

공 고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개정에 따라 인용한 해당조 및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별표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며, 별지 서식 신청서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① (안 제3조) 제1항의 “제13조” 를 “제14조” 로 변경
- ② (안 제5조) 문구 중에서 “제14조” 를 “제15조” 로 변경
- ③ (안 제6조) 문구 중에서 “제17조” 를 “제18조” 로 변경
- ④ (안 별표) II.-1.-나.-4)-가)의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삭제~~” 문구 삭제
- ⑤ (안 별표) II.-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변경
 - “(20점)” ⇒ “(21점)” 으로 변경
- ⑥ (안 별표) II.-2.-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배점 변경
 - “(3점)” ⇒ “(4점)” 으로 변경
- ⑦ (안 별표) II.-4.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 변경
 - “(24점)” ⇒ “(23점)” 으로 변경
- ⑧ (안 별표) II.-4.-가.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 변경
 - “(6점)” ⇒ “(7점)” 으로 변경
- ⑨ (안 별표) II.-4.-~~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 삭제
 - “~~OCR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삭제

⑩ (안 별지 제1호서식) 서식의 문구 수정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성별)” 로 수정

3. 입법 예고기간: 2025. 4. 22. ~ 5. 12.(20일간)

4.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징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할 경우 이유 명시)
-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징수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징수과
- E-Mail : cyg4444@korea.kr
- 전 화 : 061-659-3577
- F A X : 061-659-5814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규칙명: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8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2) 최근 평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

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저점수 또는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1)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 등과 비교·확인하여 평가
-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3)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4) 주요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
 - 가) 총자본비율(6점) 단, 지역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 삭제
 - 나)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다) 자기자본이익률(6점)
 -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금 및 예금담보 대출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리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여수시 관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 “지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시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지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전자납부 실적을 포함한 지방세입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및 근무시간 외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에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7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과 리스크 관리기능 구축 및 제고방안, 금고약정 기간 동안 자금관리 운용능력 및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실적과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 OCR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최근 3년간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계획, 금고약정 기간 동안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여수시 금고지정 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생 년 월 일 (성별)		
⑤ 소 재 지	⑥ 본 점		전 화	
	⑦ 여수지역 사 무 소		전 화	
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 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u>제13조</u> 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 시금고의 지정방법, 신청자격, 신청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의·평가 방법, 약정기간, 금고의 주요 취급업무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 ① ----- ----- ----- ----- <u>제14조</u> ----- <u>조</u> ----- -----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제안서 심의표 등)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u>제14조</u> 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기관별 제안서 심의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집계표,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제5조(제안서 심의표 등) ----- ----- <u>제15조</u> ----- ----- ----- ----- ----- ----- ----- ----- ----- ----- -----.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조례 <u>제17조</u>에 따른 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은 소관부서에서 이미 지정된 금고 중 수익률 및 자금운용 능력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한 후 금고지정 관리부서에 금고약정서의 취급회계에 관한 조항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 <u>제18조</u>----- ----- ----- ----- ----- ----- ----- -----.
---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8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2) 최근 평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저점수 또는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1)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 등과 비교·확인하여 평가
-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3)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4) 주요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
 - 가) 총자본비율(6점) 단, 지역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 삭제
 - 나)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다) 자기자본이익률(6점)
 -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금 및 예금담보 대출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리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여수시 관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 “지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시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지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전자납부 실적을 포함한 지방세입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및 근무시간 외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

한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에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과 리스크 관리기능 구축 및 제고방안, 금고 약정 기간 동안 자금관리 운용능력 및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실적과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 OCR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최근 3년간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계획, 금고약정 기간 동안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8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2) 최근 평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저점수 또는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1)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 등과 비교·확인하여 평가
-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3)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4) 주요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
 - 가) 총자본비율(6점) 단, 지역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나)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다) 자기자본이익률(6점)
 -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금 및 예금담보 대출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리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여수시 관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 “지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시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지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전자납부 실적을 포함한 지방세입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및 근무시간 외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에 대비한 운영대

책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7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과 리스크 관리기능 구축 및 제고방안, 금고 약정 기간 동안 자금관리 운용능력 및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실적과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최근 3년간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계획, 금고약정 기간 동안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여수시 금고지정 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본 점		전 화	
	⑦ 여수지역 사 무 소		전 화	
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여수시 금고지정 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생 년 월 일 (성별)		
⑤ 소 재 지	⑥ 본 점		전 화	
	⑦ 여수지역 사 무 소		전 화	
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76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4. 22.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873번지
2. 도로면적 : 30㎡
3. 도로길이 : 21m
4. 도 로 폭 : 1.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957	30	
울촌면 조화리	873	구거	1,957	30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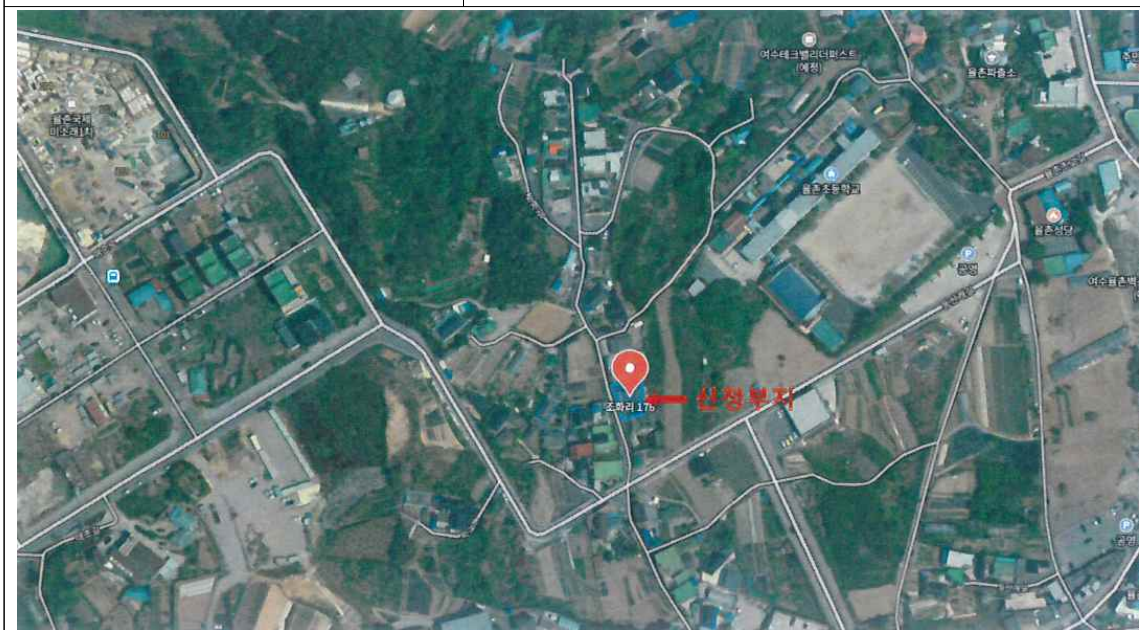


Diagram illustrating a road layout and site plan. The plan shows a road intersection and a building area.

Annotations and Dimensions:

- 도로지정폭이 : 21.0m** (Road designated width: 21.0m)
- 도로지정면적 : 30.0m²** (Road designated area: 30.0m²)
- 도로폭계선** (Road width boundary line)
- 4M 도로** (4M road)
- 신정 건물** (New building)
- 건물 앞면선** (Building front line)
- 건물 옆면선** (Building side line)
- 건물 저면선** (Building bottom line)
- 인접대지경계선** (Adjacent land boundary line)
- 조경식재면적 : 18.0m²** (Landscape planting area: 18.0m²)
- 무용지구** (Non-use zone)
- 인접대지경계선** (Adjacent land boundary line)
- 도로지정배치도** (Road designated layout map)
- SCALE : 1/100**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81-1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2025. 4. 22.

여 수 시 장

- 1. 위 치 : 소라면 소라면 대포리 81-1번지
- 2. 도로면적 : 18.9㎡
- 3. 도로길이 : 48.4m
- 4. 도 로 폭 : 4.0m
-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426	18.0	
변경	계			426	18.9	
당초	소라면 대포리	81-1	답	426	18.0	
변경	소라면 대포리	81-1	답	426	18.9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4-3852호(2024. 12. 30.)

-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만덕동 1통장 모집 공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만덕동 통장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여 수 시 만 덕 동 장

1. 공고기간 : 2025. 4. 21.(월) ~ 5. 13.(화) / 23일간

2. 모집대상 : 1명

3. 대상지역 : 만덕동 1통(오천마을)

4.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4. 28.(월) ~ 5. 13.(화) / 16일간 * 09:00 ~ 18:00(근무시간내)
※ 점심시간(12:00 ~ 13:00), 휴일(토, 일) 접수 제외
- 접 수 처 : 만덕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희망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지원신청서(사진부착),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
 - 주민총회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 주민추천서
 - ※ 대리서명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만 인정

5. 자격요건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자격기준 해당자
 -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한 자
 -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6. 통장의 임무

- 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 통장은 통을 대표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7. 결격대상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민·형사상 사건에 소추되어 조사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지방세 체납자는 부적격자로 제외

8. 임명방법 :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임자 임명

9. 통장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10.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 2명 이상 신청자가 접수한 경우, 서류 및 면접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 통장 모집에 관한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 공고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만덕동 주민센터(☎ 659-1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공고사항 찾아보는 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고시공고 클릭 후 만덕동 통장 모집공고 내용 확인

【붙임1】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만덕동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현재(년)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 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 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 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 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만덕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 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주민 추천서

○ 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상기인을 여수시 만덕동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서명)	추천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대 리서명은 불가하며 추천인 본인이 직접 서명(사인 불가, 성명 정자로 자필 기재)